

「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
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‘만 나이’로 법적·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,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.
-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및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‘만 나이’ 규정 정비 (안 제1장: 안 제1조~제13조)
-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개정 (안 제2장: 안 제14조~제17조)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장: 안 제18조~제26조)
- 임직원에게 관한 경과조치 및 권리·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(안 부칙 제4조~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행정기본법」, 「민법」, 「주민등록법」,
「지방재정법」,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‘만 나이’로 법적·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,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및 신설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‘만 나이 통일법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’의 일부개정법률이 2023. 6. 28.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“만”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됨에 따라,
-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우리시 13개 자치법규 상의 나이에 관한 조문에서 “만” 용어를 일괄 삭제함으로써 행정상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상위법령 불부합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신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,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